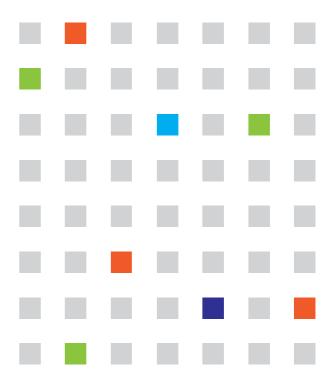


## 2022년 7월 AML REPORT

- 1. 자금세탁방지 동향
- 2. 자금세탁방지(AML) 제도
  - 최근 가상자산 이용 주요 불법행위 사례 등



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.

## (1)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 정황에 금감원 검사 착수

- □ <mark>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규모는 2조원대로 알려졌으며,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</mark>이 나오고 있으며, 검찰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□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전부터 검찰이 국내 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를 인지해 은밀히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음
- □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 사례가 잇따르자 조사 범위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며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,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음
- ⇒ 시사Point :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의무 필요!!
  - (2)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관련 논의는 10월에 본격화할 전망
- □ 올해 10월부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임
- □ 최근 유럽연합(EU)이 공식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(MiCA)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10월에 암호화폐 규제법안의 기초가 될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, 국내에서는 이 보고서를 참고해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임
- □ 10월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시작되면 내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- □ 한편, 기본법 시행까지 아직 2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 5대 거래소는 '루나'사태를 계기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음
- ⇒ 시사Point : 암호화폐(가상자산) 관련 규제 법안 도입은 세계적 추세!

# 

## (3) 철통같던 미국의 이란 제재, 가상자산거래소 '바이낸스'에 뚫려

- □ 미국이 2018년부터 강화한 對이란제재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- □ 이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바이낸스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해왔는데,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- □ 이들은 <mark>가상사설망(VPN)을 활용해 IP를 우회하여 출신국가를 숨겼는데,</mark> 2020년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했던 방식과 비슷하며,
- □ 거래소에서 '이란 소재 이용자가 거래하는 걸 조장했거나, 방관했어도 미국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'고 강조했다.
- ⇒ 시사Point :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리스크 우려

## (4) 크레디트스위스, 자금세탁 감시 미흡 협의로 유죄선고 받아

- □ '세계인의 금고'로 유명한 <mark>스위스의 글로벌 은행 크레디트스위스(CS)가</mark> 자금세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- □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크레디트스위스가 2007년 7월~2008년 12월 범죄조직 계좌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해 해당 조직이 이 은행을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했다며 스위스 프랑 200만프랑(약27억원)의 벌금형을 선고함
- ⇒ 시사Point :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범죄 방조에 처벌 강화 추세!

### (1) 최근 기상자산 이용 주요 불법행위 사례

#### □ 주요 사례

-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(이하 "가상자산사업자")가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은행계좌 개설 후,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(모집 행위 자체가 불법)
-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가 은행 계좌개설 후, 가상화폐거래소·코 인발행 재단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
- ▶ 특금법 제5조의2제4항에 의거, <sup>®</sup>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, <sup>®</sup>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자 및 <sup>®</sup>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**은행은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 래를 거절**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**해당 거래를 종료** 하여야 함

## (2) 가상자산사업자 고객확인 時 유의사항

## 1. 유사업종 영위 고객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

- □ <u>주요 업종(아래)의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 실사 여부를 판단</u>할 것
- 이래 업종으로 등록 후 불법거래 행위를 하는 시업자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
  - ①전자상거래 ②소매중개업 ③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- ④컴퓨터 및 주변장치, 소프트웨어 소매업
  - ⑤통신판매업 등 통신판매 관련 업종 ⑥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업종 등
- 실사 진행 시 업체 통보(붙임1) 후 담당자를 **자금세탁방지부 앞으로 보고**

#### 2. 가상자산 관련 상호명 사용 고객 주의

- □ 가상자산이 연상되는 키워드를 포함한 사업자명을 사용함으로써. 고객으로 하여금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오인하게 한 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 존재
- 키워드 예시 : #비트코인 #이더리움 #가상자산 #가상화폐 #암호화폐 #NFT #메타버스 #비티씨 #블록체인 등
  - 시업자명 예시 : 유한회사 이더리움 ○○○○. 주식회사 비트코인 △△△△ 등
- 상기 키워드를 사용하며, 주요 업종을 영위 중인 업체는 불법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

#### 3. 거래 개시 이후 거래모니터링 철저

- □ 요구불 계좌 개설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위장하여. 불특정 다수로부터 집금을 하는 등 불법거래 및 자금세탁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
- 가상자산사업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집금행위로 인한 Alert 검출 시. 단순·반복적 비혐의처리를 지양하고. 의심스러운거래보고(STR)를 적극 검토
  - 검출(Alert)이 되지 않더라도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임의보고 가능
  - 《 참고 :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의심거래 유형 》 ~
- 거래자정보

유한회사 이더리움 △△△△는 계좌개설일 기준 1개월 내에 설립된 신규 법인이 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업체임

- ② 거래 특이사항
- 대상자의 계좌에 월평균 1천 건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입금거래 가 발생하였고, 대표자 본인 및 특정인에게 거액 이체 및 다수의 현금 인출 거래가 발생함
- ③ 의심거래 유형
- · 유한회사 △△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여 대표자 ◇◇의 계좌로 **분할 송금하는 거래**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음
- · 비상장 코인 모집 광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 금 수취목적 으로 당행 계좌를 불법 집금용도로 사용함

#### 4. 고객확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거절 적극 검토

- □ 불법집금행위 등 의심거래 확인 시. **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** 필요(실사 검토)
  -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고객에게 추가정보 확인 요청서 발송
    - ☞ 집금계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고객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함
- □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거래거절(거래종료)
- O 아래와 같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고객확인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자금세탁방지부와 사전협의 후 거래종료 안내문 을 발송
  - 거래거절 시 의심스러운거래보고(STR) 필수
  -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(본 안내문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)
  - 기한(본 안내문 도달일로부터 X주)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
  - 확인 결과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된 경우
  - 주소·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휴업·폐업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

#### ※ 〈 참 고 〉 현행 가상자산사업자(의심고객) 고객확인 프로세스

- ① 사업자 확인 ▶ ② 현장실사 이행 ▶ ③ 거래 개시 ▶
- [4] 거래 모니터링 ➡ [5]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➡ [6] 거래종료/거래유지